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541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3719	서영석의원	2024.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24.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li> <li>·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03840	정춘생의원	2024.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24.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li> <li>·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04061	인요한의원	2024.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24.11.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li> <li>·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li> </ul>

			축조심사
2205325	김기현의원	2024. 1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5.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li> <li>·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05761	권영진의원	2024.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li> <li>·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07363	김동아의원	2025.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5.7.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li> <li>·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17435	김정호의원	2026.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6.3.30.)</li> <li>·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li> </ul>
2217660	이용우의원	2026. 3.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6.3.30.)</li> <li>·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li> </ul>

			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 상정 후 축조심사
--	--	--	----------------------------------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에서 이상 8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 4. 7.)  
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  
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  
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  
부의 지급 기간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p> <p>1. 2. (생략)</p> <p>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p> <p>②·③ (생략)</p>	<p>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4일. ----- ----- -----</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